

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- 2003. 06. 27. 최초제정
- 2009. 08. 01. 부분개정
- 2016. 04. 01. 부분개정
- 2018. 04. 01. 부분개정
- 2024. 03. 01. 부분개정
- 2026. 01. 01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1조에 의하여 입학전형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04.01.>

제2조(구성) ①본 위원회의 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학과(부)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18.04.01., 2026.01.01.>

②간사는 해당 부서의 팀(센터)장으로 선임한다.<개정 2018.04.01.>

③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, 편입학,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경우 모집학과의 학과(부)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신설 2024.03.01., 2026.01.01.>

제3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16.04.01.>

②회의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8.04.01.>

1. <삭제 2018.04.01.>
2. 모집요강 안에 관한 사항<개정 2018.04.01.>
3. 삭 제 <2016.04.01.>
4. 기타 입학전형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<개정 2018.04.01.>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